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권고

의안번호 제2016-3호

제 출 자 성북구 인권위원회

주 문

1.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 제2항

‘만 5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로 단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나이에 따른 단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단체 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예술 창달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

다.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설립하여 구민들이 자유로이 예술활동을 펼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 항목이 단원의 연령을 57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다.

이러한 문화예술단체 단원이 일정한 정도의 예술적 역량과 실력을 겸비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이의 많음과 상관 관계가 없다. 각 예술 단체의 단원의 임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예술적 역량, 조직 참여 정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임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나이 제한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57세 이상의 주민이 예술 역량과 활동 의지가 있더라도 성북구가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입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나이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단원의 임기는 나이에 따라 제한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술단체 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II. 권고의 주요 내용

○ 제9조 제2항

‘만 5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로 단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나이에 따른 단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단체 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4. 22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